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비공식번역본)

ISPM 10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와 병해충무발생 생산포장
설정을 위한 요건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Pest Free
Places of Production and Pest Free Production Sites

(1999)

FAO/IPPC 사무국

인용 시 요구되는 문구:

IPPC Secretariat. 1999.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pest free places of production and pest free production sites*. International Standard for Phytosanitary Measures No. 10. Rome. FAO on behalf of the Secretariat of the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이 정보물 내에 적용된 명칭(designation)과 자료의 표현(presentation)은, 법적 또는 어느 나라의 개발 상태, 영토, 도시 또는 지역 또는 이들의 권한과 관련되거나 또는 국경 또는 영역의 경계 설정과 관련된, UN의 세계 식량 및 농업기구(FAO)의 부분에 대한 어떠한 의견 표명을 전혀 의미하지 않는다. 특정 회사 또는 생산자의 물품에 대한 언급은, 이들이 특허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이들이, 언급되지 않은 유사한 다른 것에 우선하여, FAO에 의해 승인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정보물에 표현된 의견은 저자들의 의견이며 FAO의 의견이나 정책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 FAO, 1999



일부 권리가 보호되어 있다. 이 산물(work)은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ical-ShareAlike 3.0 IGO licence (CC-BY-NC-SA 3.0 IGO;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3.0/igo/legalcode>)에 따라 사용 가능하다.

적절하게 인용된다면, 이 라이선스의 조건에 따라 이 산물은 비상업적 목적을 위하여 복사, 재배포와 적용될 수도 있다. 이 산물의 사용에 있어서 FAO가 특정 기관, 상품 또는 서비스를 허가했다는 어떤 시사(suggestion)도 있어서는 않된다. FAO의 로고 사용은 허가되지 않는다. 이 산물이 적용된다면, 동일 또는 동등한 Creative Commons licence 하에서 허가(licensed)를 받아야만 한다. 이 산물의 번역이 수행된다면, 필요한 인용과 더불어 다음의 disclaimer를 포함해야 한다: “이 번역은 UN FAO가 수행한 것이 아니다.

FAO는 번역의 내용이나 정확함에 책임이 없다. 원 영어본이 원본 ‘authoritative edition’이 되어야 한다.”

이 라이선스 하에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 발생은, 여기에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이선스 8항에서 설명된 중재와 조정에 의해 해결될 것이다. 적용할 수 있는 중재 규칙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http://www.wipo.int/amc/endml> 조정 규칙이고, 조정은 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의 조정 규칙에 따라 수행될 것이다.

제삼자 자료. 표, 그림 또는 이미지 같은 자료들을 제3자에 제공되도록 (attributed) 재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재사용에 대한 허가가 필요한지를 결정하고 저작권 소유자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에 책임이 있다. 이 산물의 제삼자가 소유한 요인의 저작권 위반으로부터 야기되는 청구(claim) 위험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다.

판매, 권리와 licensing. FAO 정보물은 FAO 웹사이트 (www.fao.org/publications)에서 찾을 수 있고, publication-sales@fao.org를 통하여 구매 가능하다. 상업적 사용 요청은 www.fao.org/contact-us/licence-request를 통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권리와 licensing 관련 질문은 copyright@fao.org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ISPM이 재생산되는 경우 최신의 채택된 IPSMs 버전이 www.ippc.int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해야 한다.

공식적인 참고문헌, 정책 결정 또는 분쟁 회피와 해결 목적을 위하여 인용되는 IPSMs는

<http://www.ippc.int/en/core-activities/standards-setting/ispms/#614> 하에 출간된 것이다.

UN 식량농업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출판하였다.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and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본 출판물은 본래 UN FAO에서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hytosanitary Measures*(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 기준)"로 영어로 출판되었다. 본 한국어 번역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마련하였다."

“이 정보물 내에 적용된 명칭(designation)과 자료의 표현(presentation)은, 법적 또는 어느 나라의 개발 상태, 영토, 도시 또는 지역 또는 이들의 권한과 관련되거나 또는 국경 또는 영역의 경계 설정과 관련된 UN의 세계 식량 및 농업기구(FAO)의 부분에 대한 어떠한 의견 표명을 전혀 의미하지 않는다. 특정 회사 또는 생산자의 물품에 대한 언급은, 이들이 특허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이들이, 언급되지 않은 유사한 다른 것에 우선하여, FAO에 의해 승인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정보물에 표현된 의견은 저자들의 의견이며 FAO의 의견이나 정책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2024 (한국어 번역)"

"© FAO, 1999–2015 (영문판)"

출간 이력

이 부분은 본 기준의 공식적인 부분은 아님

1995-10 전문가작업단이 초안을 작성

1996-05 CEPM-3이 Pest free production sites 주제를 추가하고 초안을 수정
(1996-001)

1997-10 CEPM-4가 초안을 수정하고 회원국 의견수렴을 승인

1998 회원국 의견수렴 실시

1999-10 ICPM-2가 기준을 채택

ISPM 10. 1999.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와 병해충무발생 생산포장 설정을
위한 요건*. 로마, IPPC, FAO

2010-07 IPPC 사무국은 CPM-5(2010)에서 인지된 소소한 수정을 반영

2015-06 IPPC 사무국은 소소한 수정을 반영하고 CPM-10(2015)에서
결정된 기준 절차 폐지에 따라 기준을 변경(reformatted)함

출간 이력은 최종으로 2015-12에 업데이트됨

차례

채택

서론

범위

참고문헌

정의

요건의 개요

요건

1.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와 병해충무발생 생산포장의 개념
 - 1.1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와 병해충무발생 생산포장의 적용
 - 1.2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 또는 병해충무발생 생산포장과 병해충무발생 지역의 구분
2. 일반 요건
 - 2.1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와 병해충무발생 생산포장의 중요한 요인들
 - 2.1.1 병해충의 특징
 - 2.1.2 생산장소 또는 생산포장의 특징
 - 2.1.3 생산자의 운영 능력
 - 2.1.4 NPPQ의 요건과 책임
 - 2.2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와 병해충무발생 생산포장의 설정과 유지
 - 2.2.1 병해충 무발생을 설정하기 위한 시스템
 - 2.2.2 병해충 무발생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
 - 2.2.3 병해충 무발생 설정과 유지의 확인
 - 2.2.4 화물의 산물 ID와 식물위생 안전성
 - 2.3 완충지대의 요건
3. 문서화와 검토
 - 3.1 일반 기록
 - 3.2 식물위생증명서의 부기
 - 3.3 정보의 제공

채택

이 기준은 1999년 10월 제2차 ICPM에서 채택되었다.

서론

범위

이 기준은 식물, 식물성 산물 및 기타 규제물품의 식물위생 수입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병해충위험관리 방안으로서,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 및 병해충무발생 생산포장의 설정과 이용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다.

참고문헌

이 기준은 ISPMs를 참고한다. ISPMs은 국제식물위생 포탈(IPP) www.ippc.int/core-activities/standards-setting/ispms에서 찾을 수 있다.

IPPC. 1997.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Rome, IPPC, FAO.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된 식물위생 용어들의 정의는 ISPM 5(식물위생 용어집)에서 찾을 수 있다.

요건의 개요

이 기준에서는,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로부터 수입될 때, 식물, 식물성 산물 및 기타 규제물품이 특정 병해충이 없으며 식물위생 수입요건에 부합됨을, 수출국이 수입국에게 보증하도록, “병해충 무발생” 개념을 이용한다. 생산장소의 일정한 부분이 분리된 단위로 관리되고, 특정 병해충 또는 병해충들이 무발생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경우라면, 병해충무발생 생산포장으로서 간주될 수도 있다.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나 병해충무발생 생산포장을 이용하는 것은, 해당 병해충의 생물적 특성과 관련된 기준(criteria) 사용, 해당 생산장소의 특징, 생산자의 운영 능력 그리고 국가식물보호기관(NPPO)의

요건과 책임에 달려있다.

NPPO에 의한 식물위생조치로서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나 병해충무발생 생산포장의 설정과 유지에 대한 요건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 병해충 무발생을 설정하기 위한 시스템
- 병해충 무발생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
- 병해충 무발생을 달성되거나 유지되고 있음을 입증
- 화물의 산물 ID(identity), 식물위생 안전성(security)

필요한 경우,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나 병해충무발생 생산포장은 적절한 완충 지대의 설정과 유지도 포함한다.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나 병해충무발생 생산포장을 지원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정 활동에는, 시스템에 대한 문서화 및 취해진 조치에 대한 적절한 기록 보존이 포함된다. 병해충 무발생의 입증을 지원하고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하여는, NPPO에 의해 수행되는 재검토 및 감사 절차가 필수적이다. 양자 간 약정(arrangement)이나 약정들이 또한 필요할 수도 있다.

1.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나 병해충무발생 생산포장의 개념

1.1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 및 병해충무발생 생산포장의 적용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란: “특정 병해충이 발생(occur)하고 있지 않음이 과학적 증거에 의해 입증되며, 적절한 경우, 이러한 상태가 정해진 기간 동안 공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생산장소”이다. 이 장소에서는 적절한 기간 동안 대상 병해충이 부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왔기 때문에, 수입국이 요구하는 경우, 그 장소에서 생산 및/또는 이동된 식물, 식물성 산물 및 기타 규제 물품의 화물에 대상 병해충이 없음을 입증하는 수단을 수출국에 제공한다. 병해충 무발생은 조사 및/또는 생육 계절 중의 검사에 의해 설정되며, 해당 생산장소로 병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에 따른 기타 시스템에 의해 유지된다. 이러한 운영은 적절한 문서에 의해 입증된다.

우려 병해충, 지역적(local) 상황 그리고 수입국의 수용 가능한 위험 수준에

따라, 수출 당해 년도에 실시하는 단순한 재배 계절 검사부터 몇 년 동안 유지되는 복잡한 조사 및 입증 절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강도의 조치를 통해 적절한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도 있다.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의 개념은 하나의 생산 단위로 운영되는 토지 또는 포장의 집합체에 적용될 수 있다. 생산자는 전체 생산장소에 대하여 요구되는 조치를 적용한다.

생산장소의 일정 부분이, 생산장소 내에 독립된 단위로서 관리될 수 있는 경우, 병해충 무발생 포장(site)으로 유지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생산장소는 병해충무발생 생산포장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병해충의 생물적 특성이, 인접 지역으로부터 생산장소나 생산포장으로 들어가기 쉬울 경우, 생산장소나 생산포장의 주변에 완충지대를 설정하여 적절한 식물위생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완충지대의 범위 및 식물위생조치의 성격은 해당 병해충의 생물적 특성과 생산지역 또는 생산포장의 본질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1.2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나 병해충무발생 생산포장과 병해충무발생 지역의 구분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의 개념은 병해충무발생 지역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 (ISPM 4 (병해충무발생 지역 설정을 위한 요건) 참조). 병해충무발생 지역은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와 같은 목적을 가지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행된다.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와 병해충무발생 지역의 모든 구분은 병해충무발생 생산포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병해충무발생 지역은 생산장소보다 훨씬 넓고, 많은 수의 생산장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 전체 또는 여러 국가의 일부에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 병해충무발생 지역은 자연적 경계 또는 적절히 넓은 완충지대에 의해 분리될 수도 있다.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는, 우려 병해충이 만연해(prevalent) 있는 어떤 지역 내에 위치할 수도 있으며, 있다면 적어도 바로 인접한 곳에 완충지대를 만듦으로 의해 분리된다. 병해충무발생 지역은 일반적으로 끊임

없이 여러 해 유지되는 반면,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는 하나 또는 몇 번의 생육기간 동안만 유지될 수도 있다. 병해충무발생 지역은 수출국의 NPPO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된다.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는 NPPO의 책임과 감독 하에 생산자에 의해 개별적으로 관리된다. 해당 병해충이 병해충무발생 지역에서 발견되면, 전체 지역의 상황이 문제가 된다.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에서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장소만이 지위를 상실하며,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 지역 내 다른 생산장소들은 직접적으로 영향 받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점들이 특정 경우에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병해충무발생 지역에 위치하는 생산장소는, 수입국이 이에 대한 입증을 요구할지라도, 그 사실로써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를 위한 요건을 충족할 수도 있다.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나 병해충무발생 지역을 관리 방안으로 선택하는 것은 수출국 내 우려 병해충의 실제 분포, 해당 병해충의 특성 및 행정적 고려에 달려있다. 두 시스템 모두 병해충 무발생에 대해 요구되는 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병해충무발생 지역은, 많은 생산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지역에 조치를 공통적으로 적용함으로 주로 보증된다;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는 관리 절차, 조사 및 검사가 특정적이고 집중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에 의해 주로 보증된다.

2. 일반 요건

2.1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나 병해충무발생 생산포장의 핵심 요소

어떤 생산장소나 생산포장을 병해충 무발생으로 보증할 가능성은 다음에 달려있다:

- 대상 병해충의 특성
- 해당 생산장소 및 생산포장의 특성
- 생산자의 운영 역량
- NPPO의 요건 및 책임.

2.1.1 대상 병해충의 특성

대상 병해충의 특성이 적절할 경우, 어떤 생산장소나 생산포장은 요구되는 보증과 함께 해당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선언할 수 있다. 적절한 특성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도 있다:

- 병해충(또는 적절한 경우, 매개체)의 자연적 확산이 느리거나, 단거리
- 병해충이 인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한됨
- 병해충이 제한된 기주 범위를 가지고 있음
- 병해충이 이전의 계절에서 생존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음
- 병해충의 번식률이 보통이거나 낮음
- 적절한 계절에 포장이나 실험실에서의 육안 검사 또는 정밀검사를 통한 병해충 검출을 위한 충분하게 예민한 방법이 가용함
- 가능한 한, 병해충의 생물적 특성(예; 잠복)과 생산장소의 관리가 검출에 방해되지 않음.

해당 병해충의 방제 및 관리를 위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의 가용성은,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나 병해충무발생 생산포장을 설정하고 유지하는데 있어서도 장점이다.

2.1.2 생산장소 또는 생산포장의 특징

“생산장소”의 기본 정의(즉, 하나의 생산 또는 경작 단위로 운영됨)가 충족되어야 한다. 우려 병해충과 지역 상황에 따라서, 생산장소 및 생산포장, 적절할 경우, 완충지대도 다음과 같은 부가적인 특성을 요구할 수도 있다:

- 적절히 격리가 있는(병해충의 이동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물리적 형태가 유리), 병해충 감염원으로부터 충분한 거리에 위치
-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경계에 의해 명확하게 구분
- 완충지대로 접근(적절한 경우)
- 생산장소 및 생산포장에 수출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아닌, 해당 병해충의 기주가 존재하지 않음
- 완충지대에(적절한 경우) 해당 병해충의 기주가 존재하지 않거나, 이러한 기주들의 해당 병해충을 적절히 방제.

2.1.3 생산자의 운영 역량

생산자는 생산장소나 생산포장에 병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적절한 식물위생조치를 적용하여 병해충 무발생을 유지하기에 적당하다고, NPPO에 의해 고려되는 정해진 관리, 기술 및 운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생산자 또는 NPPO는, 필요시 완충지대에 대해서도 적절한 식물위생조치를 적용할 능력도 있어야 한다.

2.1.4 NPPO의 요건 및 책임

NPPO는, 생산자가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나 병해충무발생 생산포장에서 병해충 무발생에 필요한 보증의 선언을 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특정한 요건들을 정해야 한다. NPPO는 병해충 무발생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검사 및 기타 시스템에 대한 책임이 있다. 어떤 병해충과 기주에 대하여, 요구되는 관리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어느 국가에서든지 이용될 수 있다. 적절한 경우, NPPO는 이러한 관리 시스템에 대한 훈련을 제공할 수도 있다. NPPO는, 식물위생 수입요건을 점검해야 하고/또는 준수가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한 조건을 양자 간에 설정하여야 한다.

2.2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 또는 병해충무발생 생산포장의 설정 및 유지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 또는 병해충무발생 생산포장을 설정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 NPPO가 고려해야만 하는 네가지 주요 요소가 있다. 이들은 다음과 같다:

- 병해충 무발생을 설정하기 위한 시스템
- 병해충 무발생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
- 병해충 무발생이 달성되었거나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
- 화물의 산물 아이디와 식물위생 안전성.

2.2.1 병해충 무발생을 설정하기 위한 시스템

일반적으로 NPPO는 어떤 생산장소나 생산포장을 나중에 병해충 무발생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생산자가 충족해야 할 일련의 조건을 특정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생산장소나 생산포장(적절한 경우 완충지대)의 특성과 생산자의 운영 역량을 고려할 것이다. 특정 조치가 적용됨을 보증하기 위해

생산자(또는 생산자 단체)와 NPPO 간 공식 합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화물이 수출을 위해 증명되는 연도 보다 1년 또는 몇 년 전에 공적 조사에 의해 병해충 무발생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을, NPPO가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무발생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방법은 수출 당해 연도에 병해충 무발생이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과 동일할 수도, 다를 수도 있다(2.2.3항 참조). 아니면, 생산 당해 연도에만 병해충 무발생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을, NPPO가 요구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지, 일반적으로 NPPO와 생산자의 목적은, 몇 년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생산장소나 생산포장의 병해충 무발생 상태를 유지하는 것일 것이다. 병해충 무발생이어야 하는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나 병해충무발생 생산포장 또는 완충지대에서 해당 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병해충 무발생 상태의 취소와 그 원인 조사와 미래의 실패를 막기 위한 조치의 고려를 포함하는, 궁극적인 병해충 무발생 상태의 재설정과 확인을 위한, 특별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병해충무발생 생산포장이 설정된 경우, 경계설정 조사를 통해 그 범위를 결정할 수도 있다.

2.2.2 병해충 무발생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

NPPO는 일반적으로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 또는 병해충무발생 생산포장 (적절한 경우, 완충지대도)에 대해 생육 기간 전 그리고/또는 중 적용 되는 특정 조치를 요구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생산장소나 생산포장에 대한 일반 감독에 대해 책임이 있다. 이들의 목적은 생산장소나 생산포장으로 병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거나 이전에 검출되지 않았던 발생(occurrence)을 없애는 데 있다. 이러한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도 있다:

- 예방 조치(예; 병해충이 없는 번식 물질, 다른 기주 제거)
- 배제(exclusion) 조치(예; 물리적 장벽, 스크린과 농기구, 기계, 식물, 토양 및 재배매체에 대한 방제)
- 병해충 방제 조치(예; 재배 방법, 소독, 저항성 품종).

생산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요구된다:

- 병해충의 의심 또는 실제 발생을 NPPO에 통보
- NPPO에 의해 지정된 기간 동안 재배와 병해충 방제 절차에 관한 관련 기록 유지

2.2.3 병해충 무발생의 설정과 유지를 확인

병해충 무발생 상태의 확인은, 생산장소나 생산포장(필요하면 완충지대도)의 병해충 무발생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특정 조사를 수행하는, NPPO 직원이나 NPPO에 의해 정식 승인을 받은 사람이 실시한다. 이들은 대부분 생육 계절 검사의 형태로 수행되지만, 다른 검출 방법을 포함할 수도 있다 (시료채취 후 실험실 정밀검사, trapping, 토양 정밀검사 등).

병해충 무발생 상태는, 검사 또는 정밀검사의 횟수나 빈도(예. 1달 간격으로 3회 검사)로 기재되어 확인될 수도 있다. 검사 또는 기타 절차는, 한 생육 계절에만 관여될 수도, 또는 여러 기간에 걸쳐 요구될 수도 있다. 수확된 품목에 대한 검사나 정밀검사가, 생산장소나 생산포장에서 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수년 동안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았음이 요구될 수도 있으며, 이전에 해당 포장에서의 기주 식물 생육이 금지될 수도 있다.

확인 절차는, 생산장소를 개개의 구역(plot)으로 나누는 것과 관련된 설계에 기초하여야 하며, 병해충과 증상에 따라서 전체적인 직관 (estimation) 또는 시료채취에 의해 수행될 수도 있다.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나 병해충무발생 생산포장을 둘러싼 지역의 병해충 발생정도가 필요한 조사의 강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2.2.4 화물의 산물 아이디, 식물위생 안전성

산물의 아이디(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의 추적을 보장하기 위한 라벨링)와 화물의 보전성(integrity)을 유지하기 위해 확인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산물의 병해충 무발생은 수확 이후에 유지되어야 한다.

2.3 완충지대 요건

적절한 경우,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와 병해충무발생 생산포장의 설정과 유지는 생산장소나 생산포장과 연관된 완충지대와 관련된 절차를 포함한다.

완충지대의 범위는, 생육 계절(growing season) 진행 중 해당 병해충이 자연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 거리에 근거하여, NPPO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생육 계절 동안 적절한 간격으로 모니터링 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병해충이 완충지대에서 검출되었을 경우 취해야 할 조치는, NPPO의 요건에 따를 것이다. 생산장소나 생산포장의 병해충 무발생 상태가 취소될 수도 있거나 완충지대에서 적절한 방제 조치가 요구될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이든, 조사나 방제 조치를 위한 출입(access)이 미리 확인되어야 한다. 적절한 경우, 병해충 무발생이 유지되고 있다는 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가 설정될 수도 있다(지역적 보고/통보 및 공표, 지역 규정, 검출된 병해충의 방제/제거).

3. 문서화 및 검토

완충지대에 취해진 조치를 포함하여,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나 병해충 무발생 생산포장을 설정하고 유지하는데 취해진 조치들은, 적절하다면, 적절히 문서화 되어 정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NPPO는 현장에서의 감사(on-site audit), 재검토 및 시스템의 평가(appraisal)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3.1 일반 기록

적절하다면, NPPO에 의해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나 병해충무발생 생산포장 설정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그리고 특정 우려 병해충과 관련하여, 적용된 행정 시스템에 대한 문서화가 가용하여야 한다. 이는 사용된 예찰 시스템 (검사, 조사 및 모니터링 포함), 병해충 존재에 대응하는 절차 (시정활동 계획) 그리고 화물의 물품 아이디와 식물위생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절차의 세부사항을 포함된다.

또한 적절하다면, 특정 생육 계절에 병해충 무발생 상태 승인과 관련하여, 조사 결과와 병해충 관리 기록(예. 소독의 종류와 날짜, 저항성 품종의

사용)을 포함한, 특정 생산장소나 생산포장과 연관된 완충지대에 취해진 활동에 대한 문서화가 이용가능해야 한다.

병해충 무발생 상태의 취소와 복귀 절차도 문서화 되어야 한다.

병해충 무발생에 대한 높은 보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나 병해충무발생 생산포장을 설정하고 운영하는데 복잡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운영계획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적절한 경우, 이러한 계획은, 관련 생산자와 무역업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포함하여,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특정 세부 사항을 나열한, 양자간 협정이나 약정에 근거하게 된다.

3.2 식물위생증명서 상의 부기

NPPO에 의해 어떤 화물에 대해 식물위생증명서가 발급되는 것은, 병해충 무발생 생산장소나 병해충무발생 생산포장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수입국에서는 이를 위해 식물위생증명서에 적절한 부기를 요구할 수도 있다.

3.3 정보 제공

수출국의 NPPO는 요청 시, 수입국의 NPPO에게 병해충무발생 생산장소나 병해충무발생 생산포장의 설정 및 유지에 관한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양자간 협정이나 약정이 그렇게 제공하는 경우, 수출국의 NPPO는 병해충 무발생 생산장소나 병해충무발생 생산포장의 설정 또는 취소에 관한 정보를 수입국 NPPO에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